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767 |
|------------|------|

2025년 6월 18일  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김영옥 의원 외 21명

나. 제출일자 : 2025. 5. 26.

다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라. 상정결과

○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5년6월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영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현재 어린이 통학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 
부 통학로는 폭이 매우 좁고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어린이들이 안  
전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보행환경개선

지구로 지정된 구간 내 통학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

## 나. 주요골자

-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 (안 제6조의2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교통법」,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5. 6. 3. ~ 6. 7.

- 제출의견 : 없음

## 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<sup>1)</sup>

- 제출의견 : 원안가결
  - 「보행안전법」 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자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
  -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,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

---

1) 보행안전거과-7966(2025.6.5.) “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”

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환경개선지구<sup>2)</sup>로 지정된 통학로<sup>3)</sup>의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시장이 통학로를 개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안 제6조의2제4항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 대해서 어린이의 안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통학로 개선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하여

2)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(2025.6월 기준)

○ 추진근거

-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, 시행일 : '12. 8. 23.
- '걷는 도시, 서울' 종합계획('16.1.18. 서울시장 방침 제13호)
- 지정대상 : 생활안전지구, 보행유발지구, 전통문화지구, 대중교통지구,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

○ 지정현황

| 구분 | '13~'16 | '17 | '18 | '19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 계  |
|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지정 | 10      | 4   | 9   | 21  | 9   | 10  | 8   | 4   | 3   | 78 |
| 해제 | -       | -   | -   | -   | -   | -   | -   | 3   | -   | 3  |
| 계  | 10      | 4   | 9   | 21  | 9   | 10  | 8   | 1   | 3   | 75 |

3)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5. "교육시설"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.

6. "**통학로**"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"어린이 보호구역"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 - 이하 생략 -

##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

- 동 조례 제6조의2제2항과 제3항<sup>4)</sup>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 차량속도 저감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와 노상적치물, 옥외광고물 등을 적법하게 정비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

통학로 확폭 등 통학로 개선 및 관리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통학로 개선사업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통학로를 개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 등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
- 다만, 동 조례 제6조제1항에서 “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가 없는 실정으로 향후 어린이 안전확보가 필요한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적극 지정하여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개선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

---

4)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

제6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

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, 서울특별시경찰청장(이하 “서울경찰청장”이라 한다)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,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,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. - 이하 생략 -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767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영철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 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 
오금란, 윤종복, 이봉준,  
이상옥, 이성배, 이은림,  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 
전병주, 최민규, 황철규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 어린이 통학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학로는 폭이 매우 좁고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간 내 통학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 (안 제6조의2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도로교통법,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학로를 개선 및 관리할 수 있고, 자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<br>등) ① ~ ③ (생    략)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 | 제6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<br>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<u>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<br/>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를 이용<br/>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교통사고<br/>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학<br/>로를 개선 및 관리할 수 있고, 자<br/>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<br/>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|
| <u>④</u>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제4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교통실 보행자전거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| 조항    | 사업명            | 예산액(천원)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제6조의2 |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| 1,595,358 |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※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'25. 3. ~ 12.(방학기간 제외)
- 사업대상 : 종로 등 25개구 관내 초등학교
- 사업규모 : 교통안전지도사 682명
- 주요내용 :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통학로 동행
- 사업예산 : 1,595,358천원(시 부담분)
  -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,568,758 :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(시-구 매칭)
  - 사무관리비 26,600 : 교통안전지도사 운영경비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